

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

| 원 안 | 수 정 안 |
|--|--|
| <p>제7조(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)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<u>둔다</u>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제9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 임기는 <u>2년으로 한다</u>. 다만, 위촉직 위원 임기의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| <p>제7조(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둘 수 있다</u>.</p> <p>1. ~ 4.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9조(위원의 임기) ----- --- <u>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</u> ----- ----- -----.</p> |